

강한공주 행복한시민

# 시 보

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습니다.

제967호 2026. 2. 11.(수)

[www.gongju.go.kr](http://www.gongju.go.kr)



선 람	기관위원장	회 람						



발행 : 공주시      편집 : 홍보미디어실      ☎ 041-840-8464  
우)32552 충청남도 공주시 봉황로 1 공주시청

**【공 고】**

제2026-342호 공주시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…… 3

공주시 공고 제2026-342호

「공주시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.

2026년 2월 11일

공 주 시 장 인

## 공주시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### 1. 개정이유

- 가. 경기 불황 및 고물가 시대에 물가안정에 기여하고 있는 관내 착한가격업소를 지속 발굴하기 위한 지원시책을 마련하여 소상공인들의 경제부담을 완화하고자 함.
- 나. 지원시책 마련 시 지원근거를 명확히 하여 관련 법령 저촉사항을 해소하고자 함.
- 다.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부합하게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.

### 2. 주요내용

- 가. 제6조(종전 제5조)에 제③항을 신설하여 착한가격업소 이용활성화를 꾀하고자 함.
  - ③ 시장은 착한가격업소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을 이용하는 고객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인센티브를 지원할 수 있다.
  - 제2항 : 홈페이지 → 누리집으로 정비

나. 제7조(종전 제6조)에 지원근거를 신설하고, 일부 조문내용을 정비하고자 함.

- 4. 소규모 시설환경개선사업 → 소규모 시설환경 개선사업 및 안전점검비 지원
- 5. 기자재 및 재료구입비 지원
- 6. 상·하수도 요금 등 공공요금 지원
- 7. 종전의 제5호

다. 제10조에 포상 규정을 신설함.

- 제10조(포상) 시장은 착한가격업소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기관, 단체, 개인에게 「공주시 포상 조례」에 따라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.

라.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일부 조문을 정비함.

- 제2조 : 공주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평균가격 → 공주시 평균가격으로, 공주시장(이하 “시장”라 한다) → 공주시장으로 정비
- 제3조 : 관해 → 관하여로 정비
- 제4조제1항 : 시장 → 공주시장(이하 “시장”라 한다)으로, 시 홈페이지를 → 공주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 누리집을으로 정비
- 제5조(종전 7조) 제1항 단서 : 점검 할 → 점검할
- 제5조, 제6조, 제7조 → 각각 제6조, 제7조, 제5조로 조문 이동
- 제8조제2항 : 물가모니터요원 → 시장은 물가모니터요원
- 제10조를 제11조로 함.

### 3. 의견제출

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,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3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주시장(참조 : 경제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이유)

나. 성명(법인 그 밖의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그 사유), 주소 및 전화번호

다. 그 밖에 참고사항 등

※ 보내실 곳 : 공주시청 경제과(경제정책팀)

- 주소: 공주시 봉황로 1, 경제과(봉황동, 공주시청) / 우편번호: 32552

- 전화: 041-840-8283,8284 / FAX: 041-881-6817

#### **4. 참고사항**

이 개정안은 우리시 누리집([www.gongju.go.kr](http://www.gongju.go.kr)) 고시·공고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.

#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

조례명 : 「공주시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 
일부개정조례안

찬·반에 대한 의견 등

입법예고(안)	찬·반 여부		의견 또는 사유
	찬성	반대	

의견제출자

- 성명(단체명) :
- 주 소 :
- 연 락 처 :

그 밖에 참고사항

-

## 공주시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공주시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중 “공주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평균가격”을 “공주시 평균가격”으로, “공주시장(이하“시장”이라 한다.)”을 “공주시장”으로 한다.

제3조 중 “관해”를 “관하여”로 한다.

제4조제1항 중 “시장”을 “공주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”으로, “시 홈페이지를”을 “공주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 누리집을”로 한다.

제5조, 제6조 및 제7조를 각각 제6조, 제7조 및 제5조로 한다.

제6조(중전의 제5조)제2항 중 “홈페이지”를 “누리집”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③ 시장은 착한가격업소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을 이용하는 고객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인센티브를 지원할 수 있다.

제7조(중전의 제6조)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5호를 제7호로 하며, 같은 조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4. 소규모 시설환경 개선사업 및 안전점검비 지원
- 5. 기자재 및 재료구입비 지원

## 6. 상·하수도 요금 등 공공요금 지원

제5조(중전의 제7조) 제1항 단서 중 “**점검 할**”을 “**점검할**”로 한다.

제8조제2항 중 “**물가모니터요원**”을 “**시장은 물가모니터요원**”으로 한다.

제10조를 제11조로 하고,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0조(포상) 시장은 착한가격업소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기관, 단체, 개인에게 「공주시 포상 조례」에 따라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.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지정된 착한가격업소는 이 조례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본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정의) “착한가격업소”란 공주시에 소재한 외식업, 이·미용업,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 업종 중 판매 품목 가격이 <u>공주시</u> (이하 “시”라 한다) <u>평균가격</u> 이하이며 품질·위생·서비스 등 일정기준을 충족하고 현지실사 및 평가 등을 통해 <u>공주시장</u> 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.)이 지정하는 업소를 말한다.</p>	<p>제2조(정의) ----- ----- ----- ----- <u>공주시</u> <u>평균가격</u> ----- ----- ----- <u>공주시장</u>----- ----- -----.</p>
<p>제3조(다른 조례와의 관계) 착한가격업소에 <u>관해</u>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.</p>	<p>제3조(다른 조례와의 관계) ----- ----- <u>관하여</u> ----- ----- ----- -----.</p>
<p>제4조(신청 및 지정) ① <u>시장</u>은 신청 방법, 절차 및 지원 사항을 포함한 선정기준 평가표를 고시·공고하고 <u>시 홈페이지</u>를 통하여 착한가격업소를 공개모집 한다.</p> <p>②·③ (생략)</p>	<p>제4조(신청 및 지정) ① <u>공주시장</u> 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----- ----- ----- <u>공주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 누리집</u> ----- -----.</p> <p>②·③ (현행과 같음)</p>
<p><u>제5조</u>(이용활성화 등) ① (생략)</p>	<p><u>제6조</u>(이용활성화 등) ① (현행과 같음)</p>

② 시장은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를 시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고 홍보하여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.

<신 설>

제6조(지원) 시장은 착한가격업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1. ~ 3. (생략)
4. 소규모 시설환경개선사업

<신 설>

<신 설>

5. (생략)

제7조(점검 및 지정취소) ① 시장은 착한가격업소의 가격·위생·청결·품질·서비스·공공성 등 지정기준 적격여부를 연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. 다만, 적격여부의 판단에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점검 할 수 있다.

② -----  
----- 누리집 -----  
-----  
-----.

③ 시장은 착한가격업소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을 이용하는 고객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인센티브를 지원할 수 있다.

제7조(지원) -----  
-----  
-----.

1. ~ 3. (현행과 같음)
4. 소규모 시설환경 개선사업 및 안전점검비 지원
5. 기자재 및 재료구입비 지원
6. 상·하수도 요금 등 공공요금 지원
7. (현행 제5호와 같음)

제5조(점검 및 지정취소) ① 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.  
-----  
----- 점검할 -----.

<p>② (생략)</p> <p>제8조(물가모니터요원 운용) ① (생략)</p> <p>② <u>물가모니터요원</u>이 제1항의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도록 수당 등을 지원할 수 있다.</p> <p><u>&lt;신설&gt;</u></p> <p><u>제10조</u> (생략)</p>	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8조(물가모니터요원 운용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<u>시장은 물가모니터요원</u>----- ----- -----.</p> <p><u>제10조(포상)</u> <u>시장은 착한가격업소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기관, 단체, 개인에게 「공주시 포상 조례」에 따라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.</u></p> <p><u>제11조</u> (현행 제10조와 같음)</p>
--	--